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669

발의연월일: 2020. 11. 24.

발 의 자: 송재호·강훈식·김경협

김병기 · 김성주 · 김수흥

김영배 · 김종민 · 도종환

민형배 • 박범계 • 박완주

박홍근 · 서삼석 · 송기헌

송언석 · 송영길 · 신정훈

양이원영 · 양정숙 · 오영훈

우원식 • 위성곤 • 윤재갑

윤준병 • 이광재 • 이병훈

이상헌 • 이용빈 • 이용선

이워택 • 이장섭 • 이해식

임호선 • 전재수 • 정춘숙

정태호 · 조승래 · 주철현

한정애·한준호·허 영

홍성국 · 홍익표 의원

(449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인구가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50%를 넘어서고, 소멸위기에 놓인 지방자치단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바람이 커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균형발전의 날' 지정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국가균형발전 시책에 관한 국가와 자치단체의 책무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국가균형발전의 날 지정·운영) ① 국가균형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널리 확산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의 날을 지정·운영한다.

② 국가균형발전의 날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3조의2(국가균형발전의 날 지
	정·운영) ① 국가균형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
	를 널리 확산하기 위하여 국가
	균형발전의 날을 지정·운영한
	<u>다.</u>
	② 국가균형발전의 날 지정ㆍ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u>령으로 정한다.</u>